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출년월일 : 2009. 6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시행규칙(2008. 11. 5)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(실무)협의체 구성위원 상한 규정이 확대됨에 따라, 우리구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위원 상한선 확대(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)  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시행규칙 제1조의 개정에 따라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(실무)협의체 구성위원 상한선을 20명 이하에서 30명 이하로 확대
- 나. 법령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등을 반영

## 3. 개정근거

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3(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 및 제1조의4(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

## 4. 조례안 : 따로붙임

## 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## 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생략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에 의거
-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9. 6. 4)
- 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라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부터 제1조의4까지에 따라”로, “제20조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0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”으로, “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“구” 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로,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”으로, “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10인 이상 20인 이하”를 “10명 이상 30명 이하”로

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10인 이상 20인 이하”를 “10명 이상 30명 이하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제3조 제2항 내지 제3조 제4항에 의한”을 “제3조제2항부터 제3조제4항까지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잔여기간”을 “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합 설치·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 및 <u>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부터 제1조의4까지</u>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합 설치·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제2조(설치)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 하거나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<u>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(이하 "대표협의체"라 한다)</u>를 설치·운영한다.</p> | <p>제2조(설치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 하거나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(이하 "대표협의체"라 한다)</u>를 설치·운영한다</p> |
| <p>제3조(기능)① (생략)<br/>                    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br/>                     ③ (생략)<br/>                  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제3조(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<br/>                    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br/>                     ③ (현행과 같음)<br/>                  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</p>                      |

|  |  |
|--|--|
| <p>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(이하 “실무협의체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제4조(구성)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<u>10인이상 20인 이하</u>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 <p>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<u>10인 이상 20인 이하</u>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⑤~⑦ (생 략)</p> <p>제5조(위원명단 공개)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<u>제3조 제2항 내지 제3조 제4항에 의한</u>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(위원의 임기)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<u>잔여기간</u>으로 한다.</p> <p>제11조(회의록)①각 협의체는 다음 <u>각호</u>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1.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</p> | <p>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(이하 “실무협의체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제4조(구성)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<u>10명 이상 30명 이하</u>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<u>10명 이상 30명 이하</u>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⑤~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위원명단 공개)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<u>제3조제2항부터 제3조제4항까지에 따른</u>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(위원의 임기)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<u>남은 기간</u>으로 한다.</p> <p>제11조(회의록) ① 각 협의체는 다음 <u>각호</u>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1.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</p> |
|--|--|

|   |   |
|---|---|
| <p>2.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<br/>3. 심의사항<br/>4. 심의결과<br/>5. <u>기타</u> 위원장(실무위원장 포함)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</u>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제15조(경비지원)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·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<u>기타</u>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| <p>2.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<br/>3. 심의사항<br/>4. 심의결과<br/>5. <u>그 밖에</u> 위원장(실무위원장 포함)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</u>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제15조(경비지원)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·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<u>그 밖의</u>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|
|---|---|